

미국판례 1

논리상 명예훼손적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

Grant v. Reader's Digest Ass'n

151 F. 2d 733(미연방고등법원 제 2 순회법원 판결, 1945)

사실개요

피고 리더스 다이제스트사는 그 간행물에서 변호사인 원고가 공산당활동을 하여온 사람이라고 보도하였다.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, 1심은 문면상 당연히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상을 각하하였다.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자, 연방고등법원(러니드 핸드판사)은 이를 파기 환송하였다

판결이유의 요지

1 일반적인 도덕기준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명성을 가질 수 있고, 이러한 명성에 대한 보호의 한계는 배심원들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.

1. 정당한 사고를 가진 사람(right-thinking people)이 논리적으로는 명예 훼손적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

판결이유

러니드 핸드(L. Hand) 고등법원판사(Circuit Judge)집필

이 항소는, 문면상 법률상 근거가 부정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소장을 각하한 판결에 대한 것이다. 소상에 의하면 원고는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동 주의 변호사이고, 뉴욕주의 회사인 피고는 변호사, 판사 및 일반대중에게 읽히는 정기간행물을 출간하였는데, 그 중의 한 정기간행물 중에는 『나는 나의 조합에 정치적으로 반대한다』는 제하의 기사가 포함되어 있었다. 「그리고 또 다른 일. 우리 주에서는 정치활동위원회가 입법대리인으로 시드니 S. 그랜트라는 사람을 임명하였는데, 그는 최근에 매사추세츠 공산당을 위한 입법 대의원이었다.」 이 문장이 명예훼손이 된다는 주장근거(innuendo)는 그것이 원고에게 매사추세츠주의 공산당을 대표해왔다는 혐의를 씌웠다는 것으로, 이는 허위로서 악의적이라는 것이다.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'

(1) 배심원들은 위 말들을 어떠한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.

(2) 그와 같이 해석된 의미가 명예 훼손적인가. 따라서 이 사건은 뉴욕 주에서 한 변호사에 관해서 그가 공산당의 대리인으로 활동해왔고 또한 그 목적과 수단에 동위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.

모든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명성이다. 명예 훼손적 말들이 그 명성을 저하시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의 도덕적 경사도는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액의 감액에만 관계 있을 뿐이다. 사람은 일반적인 도덕기준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명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배심원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멸시에 대하여 그가 어디까지 보호를 받느냐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. 그것이 통상적인 법이다. 뉴욕주의 판례들은 명예훼손을 보통의 용법과 마찬가지로 「증오심, 경멸, 비웃음, 악평, 또는 수치심 등을 야기하는 언동으로 구성된 것」으로 정의하고 있다. 그러나 판례들은 때때로 제소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그 말들이 「정당한 사고를 가진」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제한이 영국에서도 명백히 인정되어 왔다. 그리고 그러한 것이 진실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은 분명하다. 모오 대

피고트 사건(Mawe v. Piggot, Irish Rep. 4Comm. Law 54)에서 실시된 바와 같이, 「범죄자들 또는 범죄의 동조자들」 사이에서는 한 사람을 「정보제공자 또는 고소인 기타 범죄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크나큰 오명을 덮어쓰게 하는 것」일 것이다. 그러나 그 말들은 명백히 제소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. 상황이 그와 같다고 하더라도, 뉴욕에서는 예외가 위와 같은 사건 외에도 적용된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말들은 용서해줄 수 있을 만큼까지 멀리 가는 것은 아니다. 카타포디스 대 브룩클린 스펙테이터사 판결(Katapodis v. Brooklyn Spectator, Inc., 287 N.Y.17, 38 N.E.2d 112)은 극도로 가난하다고 하는 것도 제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분명히 「정당한 사고를 가진」 사람들이라면 사람이 가난하다고 그를 피하거나 경멸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비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. 실로 오직 하나밖에 없는 대법원판결에 의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미쳤다고 말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.

따라서 우리는 「정당한 사고를 가진」 사람들이 변호사에 대하여 그가 공산당의 대리인이었거나 또는 그 목적 및 수단에 동조해왔다는 이유로 위와 유사한 감정을 품을 수도 있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믿는다.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, 분명히 있겠지만, 몇 명이라도 있을 것이라면,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꼈다면 그들은 「그릇된 思考를 가진」 사람들이겠지만, 그로써 충분한 것이다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다